

9-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1971. 09. 01. 제정

2018. 02. 26. 개정

주무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교내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1.01)

제2장 학사과정 장학금

제2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02. 01)

1. 성적우수장학금
2. 입학성적우수장학금
3. 중앙사랑장학금
4. 보훈장학금
5. 직계장학금
6. 공로직계장학금
7. 부속기관장학금
8. 교환학생 및 인턴십 장학금
9. 외국인장학금
10. 우수선수장학금
11. 국가시험지원장학금(개정 2014. 12. 01.)
12. 봉사장학금
13. 가족장학금
14. 근로장학금
15. 예·체능특기장학금
16. 기금장학금
17. 특성화장학금(개정 2017. 01. 03.)
18. 릴레이장학금

제3조(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의 세부명칭, 선발기준, 지급액은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12. 02. 01)

①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세부명칭	지급액
학부(과, 전공)수석	수업료 전액
학년수석	수업료 65%
학년우수	수업료 35%

② 학년우수일 경우 학년별 재학 인원 10%이내의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소속대학 학장이 선정한다.(신설)

③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는다.(신설)

④ 장학금 수혜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02. 01, 2016. 01. 01)

1. 학점기준

가. 수강신청 학점 수가 16학점 미만인 자

나. 졸업학기 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인 자

2. 미 취득학점(F)이 있는 자

3. 상대평가 대상자가 아닌 자

⑤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2. 신청과목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3. 전공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함

4. 그 외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01. 03.)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이 본 대학교가 정한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등은 해당 연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 다만, 교환학생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2. 02. 01, 2012. 09. 01, 2013. 11. 01, 2017. 01. 03.)

1. 국내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 학점과 성적요건이 부합할 경우 지급한다.(신설 2017.01. 03.)

2. 해외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신청과목 중 낙제 과목이 없을 경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따로 정한 학점과 성적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한다.(신설 2017. 01. 03.)

제5조(중앙사랑장학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12. 02. 01)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개정 2014. 12. 01)

2. 장애인으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자

3.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개정 2014. 12. 01)

4. 기타 총장 또는 장학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2. 02. 01, 2014. 12. 01)

② 지급액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7. 01. 03)

제6조(보훈장학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 손·자녀에게 관련법 규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개정 2012. 02. 01)

1. 제출서류

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손·자녀)

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본인)

다.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본조 전문 개정 2017. 01. 03.)

제7조(직계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퇴직한 자와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한 자의 직계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8. 02. 26.)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1.88이상

2. 지급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급기한 : 수업연한까지

4. 제출서류(개정 2012. 02. 01)

가. 보호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재직확인)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01. 03.)

제8조(공로직계장학금)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명예퇴직한 자의 직계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2. 02. 01)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1.88이상

2. 지급액

가. 1인 재학 시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나. 1인 초과 시 초과자에게는 수업료의 65% 금액(입학금 제외)

3. 지급기한 : 수업연한까지

4. 제출서류(개정 2012. 02. 01)

가. 보호자 경력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01. 03.)

제9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2. 02. 01)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0이상
2. 지급액 :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
3. 지급기한 : 보호자 재직 시에 한함.(신설 2012. 02. 01)
4. 제출서류(개정 2012. 02. 01)
 - 가. 보호자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01. 03.)

제10조(교환학생 및 인턴십장학금) 본 대학교 국제교류 및 인턴십 관련 규정에 의거 교환 학생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2. 02. 01)

제11조 (삭제 2010. 03. 01)

제12조(외국인장학금) ① 신(편)입학 순수외국인 특별전형(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2. 02. 01, 2018. 02. 26.)

1. 본교 언어교육원 학기별 성적 중 최고점의 두 학기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출석률 평균이 80% 이상인 자에 한해 입학 학기(16주) 유학생 기숙사 관비를 면제한다. 다만, 의학부, 영어트랙 입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2. 09. 01, 2014. 09. 01, 2018. 02. 26.)
2. 본교가 정한 기간 내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5급 이상 제출하는 학생에게 입학 학기에 한하여 수업료의 50%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의학부, 영어트랙 입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2. 02. 01, 2012. 09. 01, 2014. 09. 01, 2018. 02. 26.)
3. 영어트랙 입학자 중 본교가 정한 기간 내 IBT TOEFL 90이상 또는 IELTS(Academic) 6.5 이상 제출한 학생에게 입학 학기에 한하여 수업료의 50%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8. 02. 26.)
4.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는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졸업학기 1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 취득학점(F)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2. 02. 01, 2017. 06. 21., 2018. 02. 26.)

가. 지급액(2009학년도 입학자까지)

- 1) 성적 3.5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65%
- 2) 성적 3.0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50%
- 3) 성적 2.50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35%

나. 지급액(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 1) 성적 4.0이상인 자는 수업료 전액
- 2) 성적 3.7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50%

- 3) 성적 3.3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35%
- ② 외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별도의 협약에 의거하여 입학한 외국인은 협약에 명시한 장학금만을 지급하며 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본 시행세칙 제3조의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02. 01)

제13조(우수선수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장학금 지급액 및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02. 01, 2012. 12. 01)

① 단체종목

- 1. 종목 : 축구, 야구, 농구 우수선수 (개정 2012. 02. 01)
- 2. 지급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3. 지급기한 : 수업연한 동안 선수활동중인 자

② 개인종목

- 1. 종목 : 올림픽 개인종목(개정 2012. 02. 01, 2012. 12. 01)
- 2. 지급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3. 지급기준 : 해당학기 국가대표 선수(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함)

(본조 전문 개정 2017. 01. 03.)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 ① 재학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 02. 01, 2014. 12. 01, 2016. 01. 01)

- 1. 지급대상 국가시험 : 사법고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신설 2014. 12. 01, 개정 2017. 01. 03.)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1.88이상(신설 2014. 12. 01)
- 3. 지급액
 - 가. 1차 시험 합격자 중 국가고시 2차 시험 준비가 확인된 자 : 한 학기 수업료 전액(2회에 한함)다만,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합격자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 실비를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02. 01, 2014. 12. 01, 2016. 01. 01, 2017. 01. 03, 2017. 06. 21.)
 - 나. 2차 시험 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전액(개정 2014. 12. 01)
- 4. 신청기간 :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이후 해당 부서장이 따로 공지하며, 합격자 발표일이 학기 수업일 1/2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4. 12. 01)
- 5. 제출서류
 - 가. 합격확인서 (신설 2014. 12. 01)
 - 나. 고시반 지도교수 확인서(1차 합격생) (신설 2016. 01. 01, 개정 2017. 01. 03.)
 - 다.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증(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합격자) (신설 2017. 01. 03.)

②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자격고시 또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는 소속대학 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02. 01. 2014. 12. 01)

제15조 (삭제 2010. 03. 01)

제16조(봉사장학금)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02. 01, 2017. 01. 03.)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1.88이상
2. 지급기준(별표 1)(신설 2017. 01. 03, 개정 2017. 06. 21)

제17조(가족장학금) 친가족이 2명 이상 본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1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개정 2012. 02. 01)

1. 성적기준(수혜자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2.50이상
2. 지급액 : 수업료의 3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개정 2012. 02. 01)
4.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2. 02. 01)

(본조 전문 개정 2017. 01. 03.)

제18조 (삭제)

제19조(근로장학금)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02. 01)

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02. 01)

제20조(예·체능특기장학금) 예·체능특기장학금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나 예술경연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및 예·체능 병역면제자격을 갖춘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지급기준 별표 2) (개정 2012. 02. 01, 2017. 01. 03, 2017. 06. 21)

제21조(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신설 2012. 02. 01)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특성화장학금) 단과대학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다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02. 01, 개정 2017. 01. 03, 2017. 06. 21.)

제23조(텔레이장학금) 졸업 후 기부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장학금 지급, 기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 02. 01)

제3장 일반대학원 장학금(신설 2012. 02. 01)

제24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U우수인재장학금(삭제 2014. 12. 01)
2. 성적우수장학금(삭제 2014. 12. 01)
3. 우수재학생장학금(신설 2015. 03. 01)
4. CAU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신설 2014. 12. 01)
5. 중앙예술장학금
6. 중앙사랑연구장학금
7. 공로복지장학금(개정 2018. 02. 26.)
8. 직계장학금
9. 부속기관장학금
10. 봉사장학금
11. 학·석사학위 연계장학금
12. 석·박사학위통학과정장학금
13. 외국인장학금
14. 교환학생장학금
15. 위탁생장학금(신설 2013. 01. 01)
16. 근로장학금(신설 2017. 03. 24.)
17. 특성화장학금(신설 2018. 02. 26.)

제25조(CAU우수인재장학금) (삭제 2014. 12. 01)

제26조(성적우수장학금) (삭제 2014. 12. 01)

제26조의2(우수재학생장학금) 본교 재학생으로 학과 성적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 기준, 지급 금액, 지급 기간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03. 01)

제27조(CAU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신설 2014. 12. 01, 개정 2016. 01. 01)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본 대학교 및 주요대학교 학부출신 성적우수자로서 전일제 신입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01.01.)

② CAU GRS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는 두 개의 트랙(ST, AT)으로 선발하며, 트랙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1.01, 2016.09.01.)

트랙명	대상자	신청기준				
ST (Superior Track)	학부 신입 장학생	학부 4년간 CAU리더, 과학리더, 학부 신입생모집 요강에서 정한 장학생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자				
AT (Advanced Track) 열람용 성적기준	계열명	석사 (석·박사 통합 포함)	학·석사연계		박사	
		학부성적	학부성적 (7차학기 포함)		학부성적	석사성적
	인문사회/ 예술	A형-3.8이상	인문 사회	3.8이상	3.5이상	4.0이상
		B형-3.5이상 (다만, 학부3,4학년 평균평점 3.8이상)				
		자연/의학	3.5이상	3.5이상	3.3이상	
공학	3.3이상	3.3이상	3.0이상			

* 성적기준 외 연구실적물 제출자에게 총점의 20%이내에서 가산점 부여할 수 있다.

(박사, 석사 공통적용) (신설 2016.01.01.)

③ 학·석사 연계과정은 석사과정 진입 시 신청가능하다.(개정 2016.01.01.)

④ 석사과정의 경우, 예술계열(공연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조형예술학과(예술학 제외), 한국음악학과)은 CAU GRS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예술장학금 대상자에 포함한다.

⑤ 박사과정의 경우, 타 대학교 학부성적은 인문사회/예술계열 3.8이상, 자연/의학/공학계열 3.5이상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ST(Superior Track) 장학생은 대학원 재학 중 평점 4.0 이상유지 시 4학기 지급하며, AT(Advanced Track) 장학생은 대학원 재학 중 평점 3.5 이상유지 시 4학기동안 지급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은 3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6학기동안 지급한다.

⑦ ST(Superior Track) 장학금액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및 연구지원비를 지급하며, AT(Advanced Track) 장학금액은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을 지급한다. 단, 인문사회/예술계열 석사과정 B형은 4학기동안 학·석사 연계과정은 3학기 동안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개정 2016.01.01.)

⑧ ST, AT 장학생의 과정별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논문제출 미이행 시 기집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개정 2016.01.01.)

과정	계열	학술지 구분	의무사항
석사	인문사회/예술	등재지	A형 : 주저 1편 (또는 공저 2편) B형 : 공저 1편
	자연/의학/공학	JCR	주저 1편 (또는 공저 1편) (다만, 공저의 경우 상위 70% 이내만 인정)
학 · 석사 연계	인문사회	등재지	공저 1편
	자연/의학/공학	SCI	공저 1편
		등재지	주저 1편
박사 (석 · 박사 통합 포함)	인문사회/예술	등재지	주저 1편 + 공저 1편 (총 2편)
	자연/의학/공학	JCR	주저 1편

⑨ CAU GRS의 학술지 논문게재(게재 확정 포함)는 학위논문심사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⑩ CAU GRS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8조(중앙예술장학금) 예술계열 일반학과 석사과정 및 무용학과(실기)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전일제 신입생(학과간 협동과정 제외) 중 학과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2. 01, 2018. 02. 26.)

1. 대상 : 공연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조형예술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실기)(다만,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예술학은 제외)(개정 2014. 12. 01, 2018. 02. 26.)
2.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급기준 : 대학원 재학 중 학과별로 정한 기준 충족 시 수업료 4학기 지급(개정 2014. 12. 01)
4. 장학인원 : 예술계열 연간 10명 내외(개정 2014. 12. 01, 2018. 02. 26.)
5. 대상학과가 따로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졸업 가능함.(개정 2014. 12. 01)

제29조(중앙사랑연구장학금) 소속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과 소속 부서장의 제청을 받은 자(연구조교A, 연구조교B, 교육조교, 실험조교)에게 조교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교규정과 교육·연구·실험조교임용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8. 02. 26.)

제30조(공로복지장학금) 학교·사회 발전기여자 및 가계곤란자 등에 대해 학과장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선발대상

- 가. 학교 발전 기여자
- 나. 사회 발전 기여자
- 다. 가계곤란자

라. 기타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발기준

구 분	세부 사항		배 점
재직 기간 (30점 만점)	25년 이상		30점
	20년 이상 ~ 25년 미만		20점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점
성적 (30점 만점)	신입생(입학성적)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
	90점 이상	4.3이상	30점
	80점 이상 ~ 90점 미만	4.0 이상 ~ 4.3 미만	20점
	70점 이상 ~ 80점 미만	3.5 이상 ~ 4.0 미만	10점
	70점 미만	3.5 미만	5점
수상/연구실적물 (20점 만점)	수상 : 장관상 이상 표창		20점
	연구실적물 : 등재지 이상 논문 발표		20점
추천서* (20점 만점)	적극추천		20점
	추 천		15점
	보 통		10점

* 추천서의 추천사유 중 학교 및 사회 발전 기여정도, 가계곤란 등을 검토하여 장학위원회에서 평가함

(본조 전문 개정 2018. 02. 26.)

제31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2018. 02. 26.)

1.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2. 본 대학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3. 본 대학교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②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2.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본조 전문 개정 2017. 06. 21.)

제32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33조(봉사장학금) ① 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지급액은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33조의 2(근로장학금)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 03. 24)

제33조의 3(특성화장학금) 대학원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02. 26.)

제34조(학·석사학위 연계장학금) (삭제 2014. 06. 01)

제35조(석·박사학위 통합과정장학금) (삭제 2013. 11. 01)

제36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
 - 가. 정부 : 수업료 전액 및 생활비 등 지원
 - 나. 본교 : 입학금 지원
2. 외국인유학생장학금(개정 2016. 01. 0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의,약학계열
1차 학기	▶ 한국어능력(TOPIK) 6급 이상 또는 TOEFL 91(IBT)/TOEIC 780/IELTS 6.5 이상 ⇨ 수업료의 100%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 ⇨ 수업료의 70% ▶ 기타 : 입학성적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80점 이상 수업료의 50% <개정 2010. 3. 24>	▶ 장학금액 : 수업료의 100% 다만, 입학성적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2차 학기	▶ 3~4차 학기 기준 적용함	▶ 장학금액 : 수업료의 100%(다만, 평점 3.0 미만시 제외)
3~4차 학기	▶ 장학금액 - 성적(직전학기)평점 4.3 이상 : 수업료의 50% 성적(직전학기)평점 3.0 이상 ~ 4.3 미만 : 수업료의 30% 성적(직전학기)평점 3.0 미만 : 지급 제외 ▶ 이수학점 : 6학점 이상	

3. CAYSS(Chung-Ang University Asian Young Scientist Scholarship)

가. 대상 : 아시아지역 국가 출신 우수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으로 중앙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13. 02. 01)

나.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및 연구실별 생활비 지원금 (최저금액 월50만원). 다만, 연구실별 생활비 장학금은 연구실 소속 지도교수의 지급사항임.

다. 수혜요건

1) 대학원 재학 중 평균평점 3.5이상 유지 시, 4학기 지급. 다만,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은 최대 8학기까지 지급(개정 2014. 12. 01, 2016. 09. 01)

2) 매학기 장학금 수혜 시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4. 12. 01, 적용 2015. 03. 01)

라. 졸업요건

1) 석사 : 졸업 전 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JCR에 논문 투고한 후, 졸업 후 1년 이내에 게재 (게재 확정 포함)

2) 박사 및 석박통합 : 졸업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JCR에 논문 1편 발표 (게재 확정 포함). 졸업조건의 논문발표와 별개임.

마. CAYSS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CAYSS+ : 아시아 이외 지역 개발도상국가 출신 우수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으로 중앙대학교 소속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CAYSS+의 장학금액과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CAYSS에 준한다.

5. 국제화선도장학금 : 국제화선도학과로 지정된 학과의 입학생

가.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나. 국제화선도장학금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6. CAU International Leader Scholarship

가. 대상 : CAYSS 및 CAYSS+ 입학자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중 대학본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된 자 및 외국인 국적다변화 추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나. 장학금액 : 생활관비(의무식비 포함) 전액 또는 일부

다.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7조(교환학생장학금) “국제교류에 관한 협정” 또는 “교류협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게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38조(위탁생장학금) “교류 협력”에 의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01.01)

제39조(이중 장학 허용)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1)

1. 세계교육기행 참가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2. 교내 각종 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3. 우수논문 발표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중앙우수논문제, 연구성과지원 등)
4. 기타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4장 특수대학원 장학금(신설 2012. 02. 01)

제40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봉사장학금
3. 직계장학금
4. 부속기관장학금
5. (삭제 2017.03.24.)
6. 위탁생장학금
7. (삭제 2017.03.24.)
8. 외국인장학금 (개정 2017.03.24.)
9. 기금장학금
10. 특성화장학금 (개정 2017.03.24.)
11. (삭제 2017.03.24.)
12. 복지장학금 (신설 2017.03.24.)
13. 공개강좌장학금 (신설 2017.03.24.)

제41조(성적우수장학금) ① 입학성적,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2.03.)

구분	세부명칭	지급액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전체수석)	수업료 60%
	입학성적우수(학과/전공수석)	수업료 40%
	입학성적우수	수업료 20%
재학생	성적우수(전체수석)	수업료 50%
	성적우수(학과/전공수석)	수업료 30%
	성적우수	수업료 20%

③ 재학생성적우수자는 직전학기 6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5이상이어야 하며, 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신설 2017.02.03.)

④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7.02.03.)

구분	동점자처리기준
신입생	1.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 2. 그 외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재학생	1. 총점(취득 교과목의 취득점수 곱하기 학점수의 총합) 2. 신청과목 수 3. 그 외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봉사장학금) 특수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2.03.)

지급기준	지급액
원우회장	수업료 80% 이내
원우회 임원	수업료 30% 이내
원우회 학과(전공)대표	
원우회 사무국장	

제43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2018. 02. 26.)

1.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2. 본 대학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3. 본 대학교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

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②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2.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본조 전문 개정 2017. 06. 21.)

제44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45조(공공기관장학금) (삭제 2017. 03. 24.)

제46조(위탁성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위탁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03. 24.)

제47조(교사 및 교육공무원장학금) (삭제 2017. 03. 24.)

제48조(외국인장학금)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03. 24.)

제49조(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50조(특성화장학금) ① 특수대학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종업계 재직자

2. 교내·외 공모전 및 학술제 참가자

3. 교류협력에 의하여 입학한 자

4. 국내·외 연수 참가자

② 각 호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장학금 선발 및 지급은 [별표3]에 따라 각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50의2조(복지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장애자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②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 03. 24)

제50의3조(공개강좌장학금)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적용
경력우대	1. 산업체 장기경력자 2. 신입생의 경우 서류전형 80점 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수료 시 까지
봉사	공개강좌 원우회 임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문예창작	문예지 수상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당해학기

(본조 신설 2017. 03. 24)

제5장 전문대학원 장학금(신설 2012. 02. 01)

제51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 전문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사회적배려계층장학금
3. 봉사장학금
4. 직계장학금
5. 부속기관장학금
6. 외국인유학생장학금
7. 해외연수장학금
8. 공로 및 특별장학금

제52조(성적우수장학금) ① 입학성적, 재학기간 중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해당 계열부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53조(사회적배려계층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자 중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열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봉사장학금) 전문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및 기타 관련된 활동에 기여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열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직계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단, 의학전문대학원은 1.88/4.5 이상)에게 지급한다.(2018. 02. 26.)

1.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2. 본 대학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3. 본 대학교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②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2.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본조 전문 개정 2017. 06. 21.)

제56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조 전문 개정 2017. 03. 24)

제57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열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해외연수장학금) 전문대학원 재학자 중 인턴십·교환학생 등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에게 왕복항공료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계열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공로 및 특별장학금) 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중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문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열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기타) ①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장학에 관한 사항은 계열 장학내규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2. 09.01)

② 장학금 책정단위는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 09.01)

- 부 칙 -

-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1971학년도 제2학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74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76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76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1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2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5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⑧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6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88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2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⑪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3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⑫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4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⑬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1999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⑭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⑮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2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⑯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⑰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8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 18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본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2. 02. 0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시행세칙중 이 세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12. 08. 01)

본 시행세칙은 2012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2. 09. 0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4조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시행세칙 중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별표1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2. 12. 01)

①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13. 01. 0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3. 02. 0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3. 05. 0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3. 12. 02)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4조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까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 (적용례) 이 시행세칙 중 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별표1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4조 (기타) 각 항과 호 체계를 규정관리 규정에 맞게 일괄 수정한다.

- 부 칙 -(개정 2014. 06. 0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4. 12. 01)

제1조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12조(외국인장학금) 제1항, 제2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16. 01. 0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14조(국가시험지원장학금) 제3항, 제5항은 2016년도 합격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도 합격생까지는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2(우수재학생장학금)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개정 시행세칙 제36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는 2015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개정 2016. 08. 01)

제1조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27조(CAU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는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제36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개정 2017. 01. 03)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각 계열별 장학내규는 폐지한다.

- 부 칙 -(개정 2017. 02. 03)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7. 03. 24)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7. 06. 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31조(직계장학금)는 배우자의 경우 2019.2.28 까지 한시 적용하며, 제43조(직계장학금) 및 제55조(직계장학금)는 배우자 및 직계자녀의 경우 2019.2.28 까지 한시 적용한다.

② 2017.1.3. 개정 시행세칙 제9조(부속기관장학금), 제32조(부속기관장학금), 제44조(부속기관장학금), 제56조(부속기관장학금)의 지급액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 부 칙 -(개정 2017. 06. 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31조(직계장학금)는 배우자의 경우 2019.2.28 까지 한시 적용하며, 제43조(직계장학금) 및 제55조(직계장학금)는 배우자 및 직계자녀의 경우 2019.2.28 까지 한시 적용한다.

② 2017.1.3. 개정 시행세칙 제9조(부속기관장학금), 제32조(부속기관장학금), 제44조(부속기관장학금), 제56조(부속기관장학금)의 지급액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 부 칙 -(개정 2018. 02. 26.)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외국인장학금)는 2018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28조(중앙예술장학금), 제29조(중앙사랑연구 장학금), 제30조(공로복지장학금)의 장학생 선발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봉사장학금 배정인원 및 지급금액 현황(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 관련)

구분	직책	인원		장학금액	비고
		서울	안성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1	1	수업료 전액	
	부총학생회장	1	1	수업료 전액	
	국장	8	12	수업료의 65%	
	국원	8	10	400,000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	1	수업료의 65%	
	부총여학생회장	-	1	수업료의 35%	
	부장	-	9	수업료의 35%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1	각1	수업료의 65%	
	부학생회장	각1	각1	수업료의 35%	
	부장	각5~10	각5~10	400,000	<재학인원에 따라 차등 선발> 1,000명 미만 5명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7명 2,000명 이상 10명
	학과(부,전공) 회장	각1	각1	1,000,000	
	학과(부,전공,분반) 학년대표	각1	각1	400,000	<분반의 학년대표> 단일학부로 운영되는 공과, 창의ICT공과, 경영경제, 적십자간호대학으로 한정함.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장	1	1	수업료의 65%	
	동아리연합부회장	1	1	수업료의 35%	
	동아리분과장	13	13	550,000	
	국장	5	5	400,000	
인권복지위원회	위원장	1	1	수업료의 65%	
	부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국장	5	6	400,000	
문화위원회	위원장	1	1	수업료의 65%	
	부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국장	5	5	400,000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1	1	수업료의 65%	
	부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국장	5	1	400,000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1	-	수업료의 65%	
	부위원장	1	-	수업료의 35%	
	국장	5	-	400,000	
R.O.T.C	자치위원장	1	1	수업료의 35%	
	자치부위원장	10	10	500,000	
응원단	응원단장	1		수업료의 65%	
	응원부단장	2		수업료의 35%	
	응원단원	12		500,000	
중대신문사	부장	12		수업료의 35%	
	기자	16		400,000	
중앙헤럴드	부장	4		수업료의 35%	
	기자	10		400,000	
교육방송국	부장	11		수업료의 35%	
	기자	13		400,000	
동아리	사회봉사우수동아리		상시	450,000	
총인원		77	84		단과대학 학생회 및 서울, 안성 공용인원 제외

[별표2] 예·체능특기장학금 지급기준(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관련)

■ 예술대학

1. 대회별 수상 기준표

구분	1위	2위	3위
연극	전체 대상	기타 전공 관련대회 수상	본선진출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영화	전체 금상		
공간연출	전체 최우수상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문예창작	전체 대상 전체 금상 전체 최우수상 등단 당선 선정(최종 선정자) 장원 Winners ○○Award Best of best 그랑프리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부문 금상 부문 은상 부문 최우수상 부문 2위 이상 선정(2차 선정자) 차상 골드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부문 동상 우수상(3위에 준함) 부문 3위 이상 선정(1차 선정자) 차하 실버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사진			
무용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			
작곡	전체 대상 전체 최우수상 전체 금상 Winners award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부문 금상 부문 은상 부문 최우수상 부문 2위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부문 동상 부문 3위 이상 차하 기타 위와 동등한 수상
성악			
피아노			
관현악			
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2.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구분	시상 및 주관(주최)자
A급	■ 각 학부(전공) 등급별 대회 기준표 기준
B급	<p>■ 각 학부(전공) 관련 국제 및 전국대회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학 총장, 지방 경찰청장 - 지방언론사 사장 - 중소기업 사장(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민간 전문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최 대회(단, 1위 수상자에 한하여 B급 3위 장학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장학금액(원)

구분	1등	2등	3등
A급대회	1,000,000	700,000	500,000
B급대회	700,000	500,000	200,000

※ 영화, 공간연출 전공 메인 수상자 이외 서브, 보조역할 수상자의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장학금액으로 지급한다.

※ 한 작품에 하나의 대회 수상만 인정하며, 타 대회 수상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단체상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한다.

4. 각 학부(전공) 등급별 대회 기준표

※하단 대회명칭 및 공모전은 대회개최 주최 및 협회에 따라 비엔날레, 아트페어, 콘테스트 등으로 변경 개최 될 수 있음.

학부	전공	등급	대회명칭(주최)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	A급	동아연극상, 이해랑연극상, 희서연극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서울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배세토연극제, 전국연극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마산국제연극제, 밀양연극제, 한국뮤지컬대상, 더 뮤지컬 어워즈, 청룡영화제, 대중상영화제, 대한민국영화대상, KBS연기대상, MBC연기대상, SBS연기대상, KBS연예대상, MBC연예대상, SBS연예대상, KBS가요대추제, MBC가요대전, SBS가요대전, 아시아교육연극센터 (ATEC)초청 공연대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중국북경청년연극제, 세계연극대학연극연맹 Theatre Festival(GATS)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영화	A급	대한민국영화대상, 대중상영화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춘사나운규영화예술제, 영화평론가협회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디렉터스컷영화상,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해외국제영화제(칸/브리셀 등)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공간연출	공간연출	A급	Prague Quadrennial(학생전시부문), 월드 스테이지디자인(SWD), 스테이지엑스포(무대미술공모전),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cenographers(OISTAT), 대한민국영화대상, 대중상영화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춘사나운규영화예술제, 영화평론가협회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디렉터스컷영화상,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초단편영화제, 실험영화제, 외국제영화제(칸/브리셀 등), 동아연극상, 이해랑연극상, 희서연극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서울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배세토연극제, 전국연극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마산국제연극제, 밀양연극제, 한국뮤지컬대상, 더 뮤지컬 어워즈, 아시아교육연극센터(ATEC)초청 공연대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중국 북경 청년 연극제, 세계연극대학연극연맹 Theatre Festival(GATS)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학부	전공	등급	대회명칭(주최)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	A급	대산대학문학상(대산문화재단), 심훈문학상(심훈상록문화제), 대학동네대학소설상(문학동네), 극본 공모전(KBS, MBC, SBS, CJE&M, JTBC),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상(한국콘텐츠진흥원), 아동문학상 수상(창비어린이, 어린이와 문학, 동시마중, 청소년문학)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사진	A급	다음 작가상, 다음 미래작가상(박건희문화재단), 송은미술대상(송은문화재단), PHOTO BELT(한국판화협회), 일우사진상(일우재단), 사진 비평상(포토스페이스), 동방의 요괴들(아트인컬처)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무용	A급	동아무용콩쿠르(동아일보사), 신인무용콩쿠르(한국무용협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서울국제문화교류회), 국제현대무용콩쿠르(한국무용협회), 그리스헤라스국제콩쿠르, 베를린국제탄츠올림픽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미술학부	한국화서양화조소	A급	아시아프 선정(조선일보사), 중앙미술대전 입선(중앙일보사), 대한민국미술대전(한국미술협회), 송은미술대상전(송은문화재단), 김종영신진조각전(김종영미술관)
		B급	MBC 구상조각대전(MBC), 대교전국대학생, 대학원생조각공모(대교), 해태크라운에코환경조각(해태크라운)

학부	전공	등급	대회명칭(주최)
디자인 학부	시각	A급	한국미술국제공모대전(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국제일러스트&디자인공모전(한국일러스트학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한국디자인트렌드대전(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KT&G상상마당 공모전(KT&G), Mnet 스테이션아이디 공모전(Mnet),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Adobe), 조일광고대상(조선일보)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산업	A급	레드닷 어워드(red-dot), iF 프로젝트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IDEA(The Industrial Design Excellence Awards)(미국산업디자인협회), 굿디자인 어워드(일본산업진흥회), 인테리어 모티브(Car Design News), 나고야 디자인 DO,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지식경제부)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공예	A급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민국공예품대전(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익산한국공예대전(한국문화공예협회), 대한민국 텍스타일 디자인 대전(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한국미술협회)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패션 디자인	A급	LIFE IS GOOD 국제패션공모전(IED Education Consultancy), 부산국제패션일러스트레이션공모전(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협회),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재)서울디자인재단),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지식경제부), 대한민국패션대전(한국패션협회), 서울 신진 패션디자이너 컨테스트(서울특별시), 대학패션위크 대학 패션졸업작품공모전(SBA 서울패션센터), 대한민국전통의상 공모대전(부산광역시), 부산텍스타일디자인대전((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협회), 중앙디자인컨테스트(중앙m&b), 차세대 패션크리에이터 컨테스트((사)한국복식학회), 유비쿼터스 디지털 패션 컨테스트((사)한국의류산업협회), 루키패션콘테스트(강남문화재단),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서울텍스타일디자인경진대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전(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실내환 경디자인	A급	공간디자인 대전(한국공간코디네이션 협회), 한국색채대상(한국색채학회),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한국기린빌딩협의회_국토해양부 후원), JAD 실내환경디자인 공모전(주식회사 중앙디자인), 국제청소년 건축 공모전(한국청소년시설환경협회), 대한민국건축대전(한국건축가협회), 국제 환경디자인 공모전(서울디자인재단), 국제 실내디자인 공모전(주식회사 중앙디자인)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학부	전공	등급	대회명칭(주최)
음악학부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A급	서울국제음악콩쿨(동아일보사), 동아콩쿨(동아일보사), 중앙콩쿨(중앙일보사), 통영국제콩쿨(윤이상문화재단), 윤이상국제작곡콩쿨(윤이상문화재단), 해외파견콩쿨(음악협회), KBS콩쿨(한국방송공사), 부산 MBC 콩쿨(문화방송)
		B급	난파콩쿨(수원시), 비목콩쿨(화성시), 성정콩쿨(성정문화재단), 음연콩쿨(음연), 인터내셔널 피아노콩쿨(마스터미디어)
전통예 술학부	음악예 술 연희예 술	A급	서울국악경연대회(한국방송공사), 동아콩쿨(동아일보사), 전주대사습놀이(문화방송), 신라문화제(선양위원회), 동아연극상, 온나라국악경연대회(국립국악원)
		B급	등급별 대회 시상 및 주관(주최)자 구분표 기준

■ 체육대학 및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구분	장학금액(원)	
국가대표선발(올림픽종목)	1,000,000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주최 국내·외 대회	1위	1,000,000
	2위	700,000
	3위	500,000

※ 장학금은 개인전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3] 특성화장학금 지급기준(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50조 관련)

1. 동종업계 재직자

가. 선발기준

구분		배점기준			
		20점	25점	30점	
재직년수 (30점 만점)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성적 (25점 만점)	재학생 (평균)	3.5~3.99	4.0 이상	/	
	신입생 (총점)	200점 만점 기준	140점~179점		180점 이상
		300점 만점 기준	210점~269점		270점 이상
추천서 및 자기계발서(학업계획서) (45점 만점)		장학위원회에서 평가			

※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탈락

나. 지급액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다. 제출서류

- 1) 재학생 : 재직증명서, 추천서 및 자기계발서
- 2) 신입생 : 재직증명서, 학업계획서

※ 신문방송대학원 동종업계 재직자 장학 추가지급기준

가. 선발기준 : 매스미디어 발전에 기여한 자

구분		배점기준		
		20점	25점	30점
재직년수(30점 만점)		1~5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성적(25점 만점)	신입생 (총점)	210점~269점	270점 이상	/
추천서(45점 만점)		장학위원회에서 평가		

나. 지급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다.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다만, 2016년 3월, 9월 입학자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추천서

2. 교내·외 공모전 및 학술제 참가자

가. 지급기준

1) 교내·외 공모전 및 학술제 제작, 공연, 기획(작품, 공연, 디자인, 그림 기타) 및 참가자

2) 내용, 구성, 디자인 등 평가 우수자

나. 성적기준

1)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

2) 신입생 : 입학성적 총점 150점 이상인 자

다. 지급 금액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라. 제출서류

1) 학술제 주관관련 공문

2) 학과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3. 교류협력(MOU)에 의하여 입학한 자 : 선발 및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협약 내용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 업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국내·외 연수 참가자

가. 지급기준 : 각 특수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제한 없음)

다. 지급금액

1)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한다.

2) 국내·외 연수 참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 : 연수참가신청서